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39호
2. 발 의 자 : 이호대 의원
3. 발의일자 : 2021. 2. 4.
4. 회부일자 : 2021. 2. 9.

II . 제안이유

- 2020년 10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원격수업 실시가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더불어 법에 따른 순회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원격수업과 순회교육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이호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39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과 순회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장애유형 중 하나로 ‘건강장애’를 규정하고 있고,¹⁾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 지닌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원격수업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표] 원격수업 시스템 운영기관 현황3)

(단위 : 학급, 명)

기관명	학급 수	강사 수	전체 학생 수			월 평균 이용 학생 수
			건강 장애	기타	계	
꿀맛무지개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14	14	169	40	209	195
꿈사랑학교 (경상남도교육청)	48	30	806	209	1,015	981
한국교육개발원	38	29	452	262	714	627
계	100	73	1,427	511	1,938	1,803

- 이에 지난 2020년 10월 20일 국회에서는 건강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 등 재난으로 인해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과 함께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할 바 있습니다.4)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3)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4호, 2020. 10. 20., 일부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275, 2021.2.17.).

그러나 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중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일은 2021년 4월 21일이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칙의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안 제8조의2제2항 ‘복지시설의료기관’은 상위법과 같이 의미의 명확성을 위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0. 10. 20.>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2. 3.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 1. 29.>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 10. 30.>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0. 9. 28.] [교육부훈령 제348호, 2020. 9.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8]

5.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나. 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1) 학적처리 :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처리

(가)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3) 성적처리

(가)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한다.

(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